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최상목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 절차를 생략하고, 국제개발금융기구 용어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으로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금 채권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① 수원국의 지원방침 수락절차 생략 (안 제11조 제1항 제7호)

- 지원방침 통보 후 수원국으로부터 수락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수원국 정부와의 협정 체결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② 법령 정비 (제2조, 제3조, 안 제11조 제4항, 안 제16조)

- MDB를 지칭하는 용어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로 통일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및 「국채법」 개정('93.12.31)으로 발행 근거가 없어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의 발행방법, 사무취급에 대한 조항을 삭제
- 기금의 수입과 지출 항목 중 '채권'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수입에 '채권발행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7. ~ 5.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를 “지원방침에 따라, 해당 개도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국제개발금융기구”를 “국제금융기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채권발행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채권발행경비”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국내에서 발행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자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u> <u>②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 및 보증사채 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u> <u>③ 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u> <u>④ 채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 그 밖의 경제단체 등에 대하여 발행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할 수 있다.</u>	(삭 제)
<u>제3조(채권사무의 취급) 채권의 매출 및 상환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취급한다.</u>	(삭 제)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개도국 정부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1. ~ 6. (생략)

7. 외교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며, 이를 해당 개도국 정부가 수락할 때에는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8. (생략)

② ~ ③ (생략)

④ 국제개발금융기구, 외국의 개발원조기관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 등과 협조하여 융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규정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이자, 배당,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수입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
-----지원방
침에 따라, 해당 개도국 정부
와 협정을 체결한다.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제금융기구,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
----- 공공자금
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
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u>채권발행경비</u>,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u><신 설></u>	② 기금은 대출금, 출자금, 원리금상환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u>부칙<2024. 0. 00.></u> <u>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8773